

논산시 공고 제2023- 호

## ‘23/24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 및 제52조에 따라 고병원성 AI 유입·전파 차단을 위하여 축산 관련 사람·차량 등의 이동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26일



1. 목 적: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
2. 지 역: 전국
3. 대 상: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관련종사자
4. 기 간: 2023년 10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 고병원성 AI 발생(야생조류에서 검출 포함) 시 즉시 시행(위반 시 처분)
5. 내 용: 출입통제 조치(행정명령) 10건, 가금농장 준수사항(공고) 8건
6. 법적 근거: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격리와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명령 등) 및 제52조(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지시)
7. 위반시 처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고병원성 AI 발생 시 보상금 감액  
\*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라 방역기준 위반 시 5% 감액
8. 문 의 처: 논산시 축수산과 가축방역팀 (☎ 041-746-6115)

**붙임 1**

**'23/'24년 시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공고 내역**

구분	연번	주요 내용	명령대상	시행기간	위반시 벌칙
행정명령 (10건)	1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및 종사자	'23.10.1.~ '24.2.29. (필요시 연장)	1천만원 이하 과태료
	2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축산차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 진입가능 : 가축, 사료, 분뇨, 깔짚, 방역 * 불가 : 알, 난좌, 동물약품, 상하차반, 택배 등	축산차량		
	4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알운반차량		
	5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 불가피한 경우 검사 후 반출	산란계, 메추리 농장		
	6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분뇨차량		
	7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차량 진입금지 * 농장 내 축사와 이격된 별도 창고 또는 축사 내 사육 공간과 구획차단되어 있는 경우 소독 후 진입 가능	사료차량		
	8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 사전 신고,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 제출 준수	축산차량 및 종사자		
	9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 * 파레트, 합판, 왕겨살포기	가금농장		
	10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전통시장 판매소, 거래상인		
공고 (8건)	1	가금농장 진입로 등에 생석회 도포	가금농장	'23.10.1.~ '24.2.29. (필요시 연장)	
	2	축산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가금농장		
	3	농기계 농장 외부 보관 * 불가피한 경우 세척·소독 후 반입	가금농장		
	4	왕겨살포기 세척·소독 및 분동통로 운영, 농장 간 왕겨살포기 공용 사용 금지	오리농장		
	5	농장 출입차량 2단계 소독* * 고정식 소독기 + 고압분무 소독	가금농장		
	6	소독/방역시설이 없는 농장 부출입구로 차량과 사람 진입통제	가금농장		
	7	전실이 설치되지 않은 축사의 뒷문 등으로 사람 출입 금지	가금농장		
	8	가금농장 내로 알 운반차량 등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된 차량의 진입 허용 금지	가금농장		

## 1.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 제목 :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 관계 시설 방문 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 지역 : 전국

○ 대상 :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 시설출입차량 : 가축운반, 알운반, 동물약품운반, 사료운반, 가축분뇨운반, 왕겨·쌀겨·톱밥·깎짚운반, 퇴비운반, 난좌운반, 가금부산물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시료채취·방역차량

○ 기간 : 2023. 10. 1. ~ 2024. 2. 29.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 내용 : 상기 기간 중 시설출입차량은 가금농장\* 및 가금류 관련 축산관계 시설\*\*을 방문하기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소독필증 발급

\* 가금농장 : 축산법에 따른 허가·등록 대상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종계·종오리), 부화업

\*\* 축산관계시설 : 가금류 관련 도축장,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사료제조업, 부화장, 비료제조업, 가축분뇨처리업

-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시, 차량의 바퀴 등 하부와 운전석 등 내부를 필히 소독하여야 하며, 가금농장 방문 시 가금농장의 소유자·종사자 등에게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받은 소독필증을 제출하여야 함

- 시설출입차량은 방문하려는 가금농장의 내부(울타리 안)로 진입 여부와 관계없이 동 명령의 적용대상임

\* (예시) 계란 수집을 위해 산란계 농장의 입구 앞에 있는 환적장소까지만 가는 경우에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후 소독필증 발급 필요

- (예외기준) 농식품부에서 별도 지정·통보한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으로 살아있는 가금을 운송하는 경우, 거점소독시설을 거치지 않고 해당 도축장에 진입할 수 있음(다만, 가금차량 소독관리 도축장은 방문한 농장에서 서명한 소독확인증을 보관하여야 함)

○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행정명령은 既 시행

## 2~8.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등 출입통제 관련 행정명령

□ 제목 : 가금농장에 사람과 차량 출입통제 행정명령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및 확산 방지

○ 지역 : 전국

○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 백신접종팀, 상하차반, 가축진료인력, 컨설팅·인공수정인력, 동물약품업체 관계자, 계열화 사업자 소속 직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 기간 : 2023. 10. 1. ~ 2024. 2. 29.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 내용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 관계자는 아래 출입통제 행정명령을 준수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3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 <sup>2</sup> 초과 농장)	<p>○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진입금지 및 농장 진입 허용 차량은 농장주 등의 관리 하에 농장 진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알 운반, 동물의약품운반, 난좌 운반, 가축사체운반, 진료·예방접종, 기계수리, 가금 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 가축사육시설 운영·관리차량 등 특정 축산차량 외 차량은 가금농장의 울타리(담장) 안으로 진입을 금지함</li> <li>- 불가피하게 농장 내 진입이 필요한 특정 축산차량은 가축 운송, 사료운송, 분뇨·퇴비운송, 깔짚차량을 의미하며, 해당 차량은 농장 진입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농장 진입 시 차량 외부와 내부를 필히 재차 소독하여야 함</li> </ul> <p>*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 소독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차량의 운전자는 농장주 또는 종사자의 관리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되, 농장 내 진입 시 차량에서 하차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하차할 경우 방역복·덧신 착용 및 손과 운전석 내부를 철저히 소독 실시</li> </ul> <p>* 농장 관계자의 허락 하에 농장 내로 진입하고, 소독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농장주 또는 종사자에 의해 확인받아야 함</p>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 운반차량은 알의 상차를 위해 산란계·종계·종오리·메추리 농장의 출입구 인근에 있는 고압분무기로 소독이 가능한 거리의 구획된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하며,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도 농장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의 상차 장소는 농장의 장비·차량 및 외부 알 운반차량이 최대한 교차하지 않도록 줄 또는 띠 등으로 구획하고, 해당 장소의 바닥도 상차 작업 전후 마다 소독 실시</li> </ul> </li> <li>- 축산차량이 아닌 택배운송차량, 우편전용차량, 농장 종사자 또는 계열화사업자 관계자의 차량도 진입금지 대상이며, 긴급 또는 비상 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 출입하는 응급의료차량, 소방차량, 유조차량 등은 농장 진입 시 소독 후 진입을 허용함</li> </ul>
4	<p style="text-align: center;">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소재지 : 세종시 부강면, 포천시 자일리, 천안시 풍세면, 김제시 용지면, 나주시 공산면, 영주시 장수면, 영주시 안정면, 칠곡군 지천면, 봉화군 봉화읍, 양산시 상북면)</p>	<p>○ 산란계 밀집단지 내로 외부 알 운반차량의 진입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알 운반차량은 산란계 밀집단지 외부에 있는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에서 밀집단지에서 생산된 계란을 상차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차 장소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소독필증 발급)하고, 상차 장소에서 상차 전후 마다 소독 실시</li> </ul> </li> <li>- 다만, 시·군에서 밀집단지 출입구 인근 등에 구획되어 있고 소독시설이 설치된 별도의 장소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까지는 진입이 가능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군은 환적장소별 소독관리자를 지정해 명령 이행 여부 및 소독 실시상황 등을 상시 점검</li> <li>** 다만,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소재 관할 시·군에서 단지 내 농가가 여러 지역에 분포해 농가의 밀집도가 낮다고 판단할 경우, 농식품부 및 시·도와의 협의를 통해 밀집단지 내부에 진입 가능한 장소를 지정할 수 있음(지정된 환적장소를 검역본부에 통보)</li> </ul> </li> <li>- 알을 상차할 때 사용하는 농장·단지의 기자재·장비·차량(지게차 포함) 등은 농장·단지에 출입 시 마다 각각 소독하여야 함</li> </ul>
5	<p style="text-align: center;">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 (사육시설 50m<sup>2</sup> 초과 농장)</p>	<p>○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 반출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란계 농장 및 메추리 농장의 가금 분뇨는 2주 이상 보관 후 반출(반출한 날로부터 2주 이상 경과 후 반출)하여야 함</li> <li>- 다만, 농장 내 보관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사육 가금(폐사체 포함)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반출이 가능하며, 분뇨가 포장된 비료 등 완제품으로</li> </ul>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p>가공된 경우 또는 퇴비화된 분뇨는 동 명령에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p> <p>* 정밀검사 결과는 시료채취일로부터 1주일 내 검사한 실적까지 인정</p>
6	<p>가금농장 (사육시설 50m<sup>2</sup> 초과 농장) 및 분뇨처리시설</p>	<p>○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의 시·도 간 이동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금류 분뇨 운반차량은 시·도 간 이동을 금지하되, 분뇨 처리를 위해 부득이하게 타 시·도를 출입해야 하는 경우, 출발지 관할 지자체(시·도 가축방역기관)에 이동승인 신청 및 승인을 받아야 함</li> <li>- 이동승인을 받은 차량은 신청한 1개 농장 또는 축산시설만 출입이 가능하며,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행정명령에 따라 농장 또는 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및 소독필증 발급 필요</li> </ul> <p>* 시·도가 다르나 연접한 지역(시군 경계가 맞닿은 곳)은 시·도 내 이동으로 인정</p> <p>** 이동승인 차량 정보는 이동승인서를 발급한 시·도 가축방역기관에서 검역본부 및 도착지 관할 지자체와 공유</p>
7	<p>종계농장 및 종오리 농장 (사육시설 50m<sup>2</sup> 초과 농장)</p>	<p>○ 종계 및 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운반차량 진입금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대(포대)사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종계 및 종오리 농장 내로 진입 금지</li> </ul> <p>* 농장 외부에 지대사료 하차 후 해당 농장의 장비 등을 이용하여 농장 내로 이동하고, 작업 전·후에 사료 이동에 사용한 장비와 이동경로는 세척·소독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농장 내 축사와 떨어져 있는 별도 창고 또는 전실과 같이 축사 내 사육공간과 별도 구획·차단되어 사람과 도구 등 출입 시 소독 등 방역조치가 가능하다고 지자체에서 인정하는 시설에 지대사료를 보관하는 경우, 농장 출입구에서 차량 내외부 소독 후 해당 시설까지는 출입이 가능</li> </ul>
8	<p>가금농장 (사육시설 50m<sup>2</sup> 초과 농장)</p>	<p>○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진입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은 가금 농장 진입 전 농장 관할 시·군·구에 진입 목적과 일시, 진입 인원 등을 사전 신고(유선·문자·팩스 등)</li> <li>-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을 운송하는 차량은 농장 내 진입이 금지되며, 팀원·반원 등 인력이 농장에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을 실시(1회용 덧신 가능)하고 장비·도구·기자재 등 소독 후 농장 반입</li> </ul>

구분	적용대상	주요 명령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백신접종 및 상하차반은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li> <li>○ 가금농장에 외부 축산 관계자 등 진입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의사 등 가축 진료인력) 가축질병 검사·진료 이외의 목적으로 가금농장에 진입하는 것을 제한,</li> <li>- (컨설팅·인공수정 인력, 동물약품 및 계열화사업자 관계자, 농장 내 시설 공사를 위한 외부 인력)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가금농장에 진입 제한, 부득이하게 진입하는 경우에도 축사 내 진입은 금지</li> <li>- 농장주 등의 요청으로 부득이 농장에 진입 시 관할 시·군·구에 사전 신고 및 농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손·신발 소독 실시(1회용 덧신 가능), 농장에서 작업 후 해당 농장주(관리자)를 통해 방역수칙 준수 서약서를 관할 시·군·구에 당일 제출</li> </ul> </li> </ul>
9	가금농장 (사육시설 50m <sup>2</sup> 초과 농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도구 및 기자재 공용 사용 금지</li> <li>- 2개 이상의 가금농장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은 1개 농장(A)에서 사용하는 파레트·합판·왕겨살포기를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다른 농장(A 이외)으로 이동하는 것을 금지</li> <li>* 동일 세대의 구성원이 소유한 가금농장의 경우를 포함함</li> </ul>

○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10. 전국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행정명령

□ 제목 :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가금 유통제한

○ 목적 :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방지 및 전파 차단

○ 지역 : 전국

○ 대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의 종사자

○ 기간 : 2023. 10. 1. ~ 2024. 2. 29.

\*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검출) 상황 등에 따라 운영기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고병원성 AI 확진(야생조류 발생 포함) 시 즉시 시행(확진일 기준 행정명령 위반 시 처분)

○ 내용 : 상기 기간 중 전국 전통시장 등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70일령 미만), 오리, 산란성계 및 육계 유통을 금지함

\* 전통시장은 상설시장 내 가금판매소, 3·5일장 등에서 가축거래상인 등이 가금을 판매하는 곳을 모두 포함함

- 유통제한 대상 가금이 아닌 가금을 유통하는 경우, 각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정한 곳에서만 판매하여야 하며, 판매 전·후 마다 해당 시설·장소 소독 및 해당 가금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이동승인서(검사증명서)를 휴대\*하여야 함

\*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제7조제4항에 따라 가축거래상인이 가금 거래 시 이동승인서 휴대 의무

○ 근거 법령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

○ 위반 시 벌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 명령서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8.29.>

## 격리 · 억류 · 이동제한 · 소독 · 교통차단 · 출입통제 명령서

제 호

가축사육시설	농장명							
	소재지							
소유자 (관리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명령의 내용	명령의 구분				명령의 이유			
	이행장소				이행기간		대상 두수	
명령대상	가축	축종	품종	성별	연령	귀표(개체) 번호	특징	비고
		가금						
	사람							
	차량							
준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 및 제28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를 명합니다.

년 월 일

논 산 시 장



### 유의사항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제1항(같은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따른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교통차단·출입통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57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